

“ESG 경영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하는 혁신 공기업”

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
2026년도 요소수(40%) 구매 단가계약(하반기)

규격서

2026. 7.



여수시도시관리공단
YEOS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

약품 구매 규격서

1. 적용범위

본 규격서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 (이하 “발주처”)에서 요소수(40%) 공급업체(이하 “계약상대자”)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약품에 관하여 규정한다.

2. 목 적

본 규격서는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에 산성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(NOx)을 저감 배출하기 위해 선택적 무 촉매 환원 설비(SNCR)에서 사용되는 요소수(40%)에 대한 납품 방법 및 안전관리 등 일반 사항을 기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, 안정적인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.

3. 납품위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진달래길 310-157 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

4. 납품기한

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“발주처”의 운영 사정에 따라 “계약상대자”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5. 납품장소

가. 납품장소

-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 내 요소수(40%) 저장탱크

나. 요소수(40%) 저장탱크 용량 : 10m³

6. 납품 방법 및 절차

가. 운송은 제품 운반 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하여야 하며, “발주처”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중량을 확인받은 후, 요소수(40%) 저장탱크에 직접 하역하여야 한다.

나. 납품 물량은 약 10톤/1회 정도 납품할 수 있으며, “발주처”의 요구 시 10톤 이하도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.

다. “발주처”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문서(FAX) 또는 유선으로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납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주간(09:00~16:00)에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, 소각시설의 운영상 긴급을 필요로 하는 “발주처”의 납품 요구 시 납품일, 시간과 관계없이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.

라. 납품은 “발주처”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, 이를 불이행하고 납품한 양은 인정하지 아니하며,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책임진다.

7. 규격 및 예정 수량

가. 요소수(40%) 규격

NO.	구 분	규 격
1	농도(액상)	요소[(NH ₂) ₂ CO] 40% 이상
2	비중	1.10 g/cm ³ 이상
3	pH	7 이상
4	제조용수 사용	순수 또는 연수
5	결정화	35℃ 이상에서 침전물 발생이 없어야 함
6	색상	무색투명

나. 예정 수량

품 목	약품사용량(kg)	용 도	비고
요소수(40%)	40,000	소각설비 내 분무 [질소산화물(NOx)저감용]	-

8. 품질보증

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납품한 약품이 “요소수(40%) 제품규격서”상의 품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납품된 약품은 시료 채취 후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된 공인기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공인기관에서 수행하는 품질시험은 3개 항목(농도, 비중, pH)으로 품질시험성적에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, 품질 규격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.

다. 납품 시 검수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하며, “발주처”의 요청할 때 공인분석기관에 요청한 검수도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한다.

라. 요소수 품질과 관련하여 소각시설 운영 중 “계약상대자”가 납품한 요소수

로 인하여 환경 관련 법규(대기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 등)를 위반하거나, 관련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“발주처”는 별도로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품질상 문제 발생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다음 “10. 규격미달 물품에 대한 조치”에 기술된 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일체 비용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해야 한다.

9.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

- 가.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고용인이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손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, 인명 상의 피해를 줬을 때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나. “계약상대자”는 납품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“계약상대자”가 책임을 져야 한다.
- 다. “계약상대자”는 요소수(40%)의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 절차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고용인(운전원) 등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.
- 라.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“계약상대자의 고용인”이 납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(시료 채취 및 입회행위 등 포함)는 “계약상대자”가 행한 것으로 본다.

10. 규정 품질 미달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조치

- 가. 납품된 약품을 본 규격서 제7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결과 품질 규격에 미달한 경우, “계약상대자”는 납품된 차량에 대하여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, 품질 규정에 미달한 약품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“발주처”에게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나. 납품 기일 지연이나 규격미달 물품이 납품될 때 계약불이행으로 보고 “계약상대자”는 불임과 같이 주의, 경고, 계약 해지 및 차기 계약 배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계약불이행 횟수	1회	2회	3회
납품지연	주 의	경 고	계약해지 및 익년계약시 배제
물품분석결과 규격 미달 시(납품기준 등)	경 고	계약해지 및 익년계약시 배제	-

11. 사전조사 및 주지 의무

- 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 전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한다.
- 나.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2. 안전관리

- 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최초 납품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약품을 납품할 때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, 주변 오염물질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있다.
- 다. 약품의 납품 및 입고할 때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있다.
- 라.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13. 대금지불

- “계약상대자”는 매월 초 전월 납품량에 대하여 정산,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며, “발주처”의 물품 검수를 완료한 후 “계약상대자”의 요청으로 납품실적에 따라 다음 달 말 정산, “발주처”의 대금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

14. 기 타

- 가. “계약상대자”는 요소수(40%)의 납품 등을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거나, 이면계약, 위임, 위탁 등을 할 수 없다. 적발 시 계약불이행으로 보고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 해지 및 차기 계약 배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나. 약품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“발주처”가 요청할 때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다. 약품 사용예정량은 추정치이며 “발주처”의 운영조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, 운영상 구매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라. “발주처”의 운영상 이유로 약품 사용이 불필요하여 구매하지 않아도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